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채우진 의원)

의안 번호	22-103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9. .

발의자 : 고병준, 권인순, 김승수, 남해석,
신종갑, 차해영, 채우진, 한선미

1. 개정이유

마포구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마포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 우선사용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

3. 관계법령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운영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2. 9. 13. ~ 9. 19.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
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</u> 1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</u> 2. <u>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
【관 계 법 령】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11. 4.][법률 제18860호, 2022. 5. 3., 일부개정]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<신설 2012. 1. 17.>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3. 18.>

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8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20. 12. 8.>

【관 계 법 령】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1. 9. 29.][대통령령 제32018호, 2021. 9. 29., 타법개정]

제4조(생활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·군·구 :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·외 체육시설
2. 읍·면·동 :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관내 구립 체육시설 이용 시, 마포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,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김현우
연 락 처	02-3153-9852